

17.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(안) 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 제1999-178호 1999. 5. 25.

개 정 이 유

건설산업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건설업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.

주 요 골 자

- 가.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내국인과 같이 부도·파산 등의 경우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함에 따라 등록신청시 이의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.
- 나. 건설업자의 상호 등 변경신고 의무제도가 폐지되고 건설업등록수첩등에 기재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청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이의 신청서식 및 절차를 정함.
- 다. 건설업의 양도·법인합병 또는 상속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이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절차를 정함.
- 라.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의 영위기간과 공사실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건설업자의 구조조정을 지원함.

- 마. 시공관리대장의 작성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공관리대장에 작성하던 하도급 및 시공참여자 현황을 건설공사대장에 함께 작성하도록 보완함.
- 바.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시공능력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.
- 사.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전문건설업자와 건설공사를 공동도급받은 경우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실적을 일반건설업자의 시공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.
- 아.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공사에 참여하게 한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함.
- 자. 의무하도급 대상공사금액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의무하도급비율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인 경우 20%, 30억원이상인 경우 30%로 조정함.
- 차.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관련자료를 이용하는 자 및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수료 결정기준을 정함.